

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사항

2023. 09. 01.



사단
법인 **한국도선사협회**
Korea Maritime Pilots' Association

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사항

- | | |
|---------------------------------|---------------------------------|
| 1. 1996. 5. 13. 건교부령 제65호 부칙 관련 | 2. 1998. 7. 1. 도선선료 변경 신고사항 |
| 3. 1999. 7. 1.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4. 2000. 9. 18.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 5. 2000. 11. 15.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6. 2001. 8. 17.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 7. 2003. 1. 1.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8. 2003. 3. 4.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 9. 2004. 1. 1.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10. 2004. 1. 1.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 11. 2004. 1. 1. 도선선료 변경 신고사항 | 12. 2004. 4. 12.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 13. 2004. 6. 1.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14. 2004. 10. 1. 도선선료 변경 신고사항 |
| 15. 2005. 7. 1.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16. 2005. 10. 1.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 17. 2006. 2. 1. 도선(선)료 변경 신고사항 | 18. 2006. 10. 1.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 19. 2006. 12. 1. 도선(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 2008. 1. 1. 도선(선)료 변경 신고사항 |
| 21. 2008. 1. 1.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2. 2008. 7. 1.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 23. 2008. 11. 1.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4. 2009. 1. 1.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 25. 2009. 8. 10. 도선료 신고사항 | 26. 2009. 9. 11. 도선료 신고사항 |
| 27. 2010. 1. 1.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8. 2010. 9. 1. 도선(선)료 변경 신고사항 |
| 29. 2010. 12. 1. 도선료 신고사항 | 30. 2011. 3. 1. 도선(선)료 변경 신고사항 |
| 31. 2011. 9. 1. 도선(선)료 변경 신고사항 | 32. 2011. 12. 1. 도선(선)료 변경 신고사항 |
| 33. 2012. 8. 1.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34. 2012. 9. 1. 도선(선)료 변경 신고사항 |
| 35. 2013. 2. 1.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36. 2013. 4. 1.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 37. 2013. 12. 1.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38. 2014. 1. 15.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 39. 2014. 7. 1. 도선(선)료 변경 신고사항 | 40. 2014. 11. 1.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 41. 2015. 2. 1. 도선(선)료 변경 신고사항 | 42. 2015. 5. 1. 도선(선)료 변경 신고사항 |
| 43. 2015. 8. 18.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44. 2015. 12. 1.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 45. 2016. 1. 11.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46. 2016. 7. 1. 도선(선)료 변경 신고사항 |
| 47. 2016. 10. 1.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48. 2017. 8. 1. 도선(선)료 변경 신고사항 |
| 49. 2018. 1. 1. 도선(선)료 변경 신고사항 | 50. 2018. 8. 9. 도선(선)료 변경 신고사항 |
| 51. 2018. 11. 1.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52. 2019. 1. 1.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 53. 2019. 3. 22.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54. 2019. 8. 1.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 55. 2020. 1. 1. 도선(선)료 변경 신고사항 | 56. 2022. 2. 1. 도선(선)료 변경 신고사항 |
| 57. 2022. 8. 30. 도선(선)료 변경 신고사항 | 58. 2023. 9. 1. 도선선료 변경 신고사항 |

사단법인 한국도선사협회

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사항

<법적근거>

건설교통부령 제65호(1996. 5. 13.)에 의거 도선료 및 도선선료가 법정 요금에서 신고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 부칙 제2항에서 기존 요금의 신고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이를 보존 사용하고자 함

제1조(도선료) <(구)도선법 시행규칙 제19조> ①도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도선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의 도선료가 27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7만원의 최저도선료를 적용한다.<신설 2011. 8. 2. 신고 수리>

제2조(도선료의 할증) <(구)도선법 시행규칙 제20조> ①도선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할증도선료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1. 1. 11. 교통부령 643호>

1.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도선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도선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규정된 도선료의 5할
2. 야간에 도선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규정된 도선료의 5할
3.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에 도선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규정된 도선료의 3할. 다만, 공휴일의 야간에 도선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22. 1. 24. 변경신고 수리>
4.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 및 위험물을 부린 후 가스를 제거하지 아니하거나 불활성가스를 채우지 아니한 선박을 도선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도선료의 2할을 할증한다.
5. 선거에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만의 항내이동요금의 5할. 다만, 야간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항내이동요금의 7할을 가산한다.<1993. 2. 2. 신설 교통부령 제998호, 개정 2000. 11. 15. 변경신고 수리>
6. 선박을 안벽에 접안 또는 이안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만의 항내이동요금의 3할을 가산한다.<1993. 2. 2. 신설 교통부령 제998호>

②제1항제2호에 규정된 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8. 6. 17. 변경신고 수리>

월 별 구 분	야간으로 보는 시간
12월부터 1월까지	17시 30분부터 07시 30분까지
2월부터 3월까지	18시 00분부터 07시 00분까지
4월부터 5월까지	19시 00분부터 05시 30분까지
6월부터 7월까지	19시 30분부터 05시 30분까지
8월부터 9월까지	19시 00분부터 06시 00분까지
10월부터 11월까지	17시 30분부터 07시 00분까지

제3조(도선대기료, 도선취소료, 도선시간변경료 및 긴급도선료) <(구)도선법 시행규칙 제21조> ①도선사는 미리 약정한 도선시작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상을 경과하여 대기한 경우에는 그후 경과한 매1시간(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마다 9만원의 도선대기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부산 북항과 신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선에 한하여 매 30분마다 9만원의 도선대기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 변경신고 수리>

②도선사는 미리 약정한 도선시작시간으로부터 소급하여 각 지방도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일정한 시간 이내에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도선요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 1에 규정된 도선료의 3할에 상당하는 금액을 도선취소료로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0. 9. 18, 2008. 12. 5. 변경신고 수리>

③도선사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4회 이상 도선시작시간을 변경 요청하여 도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표 1에 규정된 도선료의 3할에 상당하는 금액을 도선시간변경료로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00. 9. 18. 신고 수리>

④도선사는 사전통보 없이 도선시작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긴급도선을 요청하여 도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표 1에 규정된 도선료의 3할에 상당하는 금액을 긴급도선료로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00. 9. 18. 신고 수리>

제4조(도선선료) <(구)도선법 시행규칙 제26조> ①도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도선선료는 별표 2와 같다.

②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의 도선선료는 별표 2에 규정된 도선선료에 3할을, 야간도선선료는 별표 2에 규정된 도선선료에 5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휴일의 야간에 도선선을 운항하는 경우에는 야간도선선료로 한다.<1993. 2. 2. 교통부령 제998호><개정 2022. 1. 24. 변경신고 수리>

③제2항의 경우에 야간의 시간 구분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근거>

- 1998. 6. 26. 제1차 도선선료 변경신고 수리(1998. 7. 1 시행)
(1998. 6. 25.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결정)
- 1999. 6. 21. 제1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1999. 7. 1 시행)
(1999. 6. 11.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결정)
- 2000. 9. 18. 제2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2001. 1. 1 시행)
(2000. 7. 21.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결정)
- 2000. 11. 15. 제3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2001. 1. 1 시행)
(2000. 10. 31.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결정)
- 2001. 8. 17. 제4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2002. 1. 1 시행)
(2001. 7. 24.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결정)
- 2002. 11. 1. 제5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2003. 1. 1 시행)
(2002. 10. 21.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결정)
- 2003. 3. 4. 제6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2003. 3. 4 시행)
(2003. 2. 24.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결정)
- 2003. 11. 17. 제7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2004. 1. 1 시행)
(2003. 10. 27.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결정)
- 2003. 12. 19. 제8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2004. 1. 1 시행)
(2003. 12. 8.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결정)
- 2003. 12. 29. 제2차 도선선료 변경신고 수리(2004. 1. 1 시행)
(2003. 12. 8.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결정에 따라
2003. 12. 23 실무회의 협의·결정)
- 2004. 4. 12. 제9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2004. 4. 12 시행)
(2003. 10. 21. 속초항 도선이용계약서 체결)
- 2004. 5. 1. 제10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2004. 6. 1 시행)
(2004. 3. 3.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결정)
- 2004. 9. 13. 제3차 도선선료 변경신고 수리(2004. 10. 1 시행)
(2004. 9. 8.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결정)
- 2005. 6. 26. 제11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2005. 7. 1 시행)
(2005. 3. 30. 속초항 도선이용계약서 체결)
(2005. 4. 12. 인천항 도선이용계약서 체결)
- 2005. 9. 20. 제12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2005. 10. 1 시행)
(2005. 9. 1. 울춘항 및 태인도 부두 도선이용계약서 체결)
- 2005. 12. 28. 제13차 도선료 및 제4차 도선선료 신설·변경신고 수리
(2006. 2. 1 시행. 다만, 신항 도선구간은 2006. 1. 1 시행)
(2005. 12. 19.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결정)
- 2006. 9. 22. 제14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2006. 10. 1 시행)
(2006. 10. 1. 울산항 및 장생포항 도선이용계약서 체결)
- 2006. 10. 8. 제15차 도선료 및 제5차 도선선료 변경신고 수리
(2006. 12. 1 시행. 다만, 군산항 도선선료는 2006. 10. 8 시행)
(2006. 9. 25.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결정)
- 2007. 11. 30. 제16차 도선료 및 제6차 도선선료 변경신고 수리
(2008. 1. 1 시행)(2007. 11. 19.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결정)
- 2007. 12. 26. 제17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2008. 1. 1 시행)
(2007. 10. 10. 인천항 도선이용계약서 체결)
(2007. 9. 13. 대산항 도선이용계약서 체결)
- 2008. 6. 17. 제18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2008. 7. 1 시행)
(2008. 5.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 2008. 10. 28. 제19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2008. 11. 1 시행)
(2008. 10.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 2008. 12. 5. 제20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2009. 1. 1 시행)
(2008. 11. 20.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결정)
- 2009. 8. 9. 제21차 도선료 신고 수리(2009. 8. 10 시행)
(2009. 7. 10.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결정)
- 2009. 9. 10. 제22차 도선료 신고 수리(2009. 9. 11 시행)
(2009. 8. 28.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결정)
- 2009. 12. 24. 제23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
(2010. 1. 1 시행. 다만, 포항항 도선구는 2010. 2. 1 시행)
(2009. 12. 09.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결정)
- 2010. 8. 24. 제24차 도선료 및 제7차 도선선료 변경신고 수리
(2010. 9. 1 시행)(2010. 8.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 2010. 11. 26. 제25차 도선료 신고 수리(2010. 12. 1 시행)
(2010. 11.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 2011. 2. 28. 제26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2011. 3. 1 시행)
(2011. 2. 28.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결정)
- 2011. 8. 2. 제27차 도선료 및 제8차 도선선료 변경신고 수리
(2011. 9. 1 시행)(2011. 7. 6.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결정)
- 2011. 11. 28. 제28차 도선료 및 제9차 도선선료 변경신고 수리
(2011. 12. 1 시행)(2011. 11.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 2012. 7. 24. 제29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
(2012. 8. 1 시행)(2012. 7.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관련 근거>

- 2012. 8. 7. 제10차 도선선료 신설변경신고 수리
(2012. 9. 1 시행)(2012. 8.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 2013. 1. 22. 제30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
(2013. 2. 1 시행)(2012. 12.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 2013. 1. 22. 제30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
(2013. 2. 1 시행)(2012. 12.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 2013. 3. 14. 제31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
(2013. 4. 1 시행)(2013. 2.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 2013. 11. 26. 제32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
(2013. 12. 1 시행)(2013. 10.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 2014. 1. 13. 제33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
(2014. 1.15 시행)(2013. 12.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 2014. 7. 1. 제34차 도선료 및 제11차 도선선료 변경신고 수리
(2014. 7. 1 시행)(2014. 6.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 2014. 10. 30. 제35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
(2014. 11. 1 시행)(2014. 9.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 2015. 1. 23. 제36차 도선료 및 제12차 도선선료 변경신고 수리
(2015. 2. 1 시행)(2014. 12. 22.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결정)
- 2015. 4. 21. 제37차 도선료 및 제13차 도선선료 변경신고 수리
(2015. 5. 1 시행)(2015. 3.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 2015. 8. 17. 제38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
(2015. 8. 18 시행)(2015. 7.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 2015. 12. 1. 제39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
(2015. 12. 1 시행, 다만 통영 LNG생산기지 도선료는 2016. 1. 1. 시행)
(2015. 10.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 2016. 1. 11. 제40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
(2016. 1. 11 시행)(2015. 12.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결정)
(다만 평택항은 2015. 10.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 2016. 6. 17. 제41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 및 제14차 도선선료 변경신고 수리
(2016. 7. 1 시행)(2016. 2.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결정)
(다만 동해항은 2016. 6.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 2016. 10. 1. 제42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
(2016. 10. 1 시행)(2016. 8.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 2017. 8. 1. 제43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 및 제15차 도선선료 변경신고 수리
(2017. 8. 1 시행)(2017. 5.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 2018. 1. 1. 제44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 및 제16차 도선선료 변경신고 수리
(2018. 1. 1 시행)(2017. 12.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결정)
- 2018. 8. 9. 제45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 및 제17차 도선선료 변경신고 수리
(2018. 8. 9 시행)(2018. 7.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결정)
- 2018.11. 1. 제46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
(2018. 11. 1 시행)(2018. 10.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 2019. 1. 1. 제47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
(2019. 1. 1 시행)(2018. 12.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 2019. 3. 22. 제48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
(2019. 3. 22 시행)(2019. 2.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 2019. 8. 1. 제49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
(2019. 8. 1 시행)(2019. 7.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 2020. 1. 1. 제50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
(2020. 1. 1 시행)(2019. 12.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 2022. 2. 1. 제51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
(2022. 2. 1 시행)(2021. 12.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 2022. 8. 30. 제52차 도선료 변경신고 수리
(2022. 8. 30 시행)(2022. 8.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 2023. 8. 16. 제18차 도선선료 변경신고 수리
(2023. 9. 1 시행)(2023. 8.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 의결)

도 선 료

- 도선기본료
- 도선료의 할증
- 도선대기료 및 도선취소료
- 1999. 7. 1. 시행 제1차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00. 9. 18. 시행 제2차 도선대기료 및 도선취소료의 변경,
도선시간변경료 및 긴급도선료의 신설 신고사항
- 2000. 11. 15. 시행 제3차 인천항 도선료 및 갑문 할증료 변경 신고사항
- 2001. 8. 17. 시행 제4차 평택항 동·서부두 도선료 신설 신고사항
- 2003. 1. 1. 시행 제5차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03. 3. 4. 시행 제6차 울산항(온산항) 및 마산항 LNG부두 도선료 신설 신고사항
- 2004. 1. 1. 시행 제7차 목포항 도선료 조정 신고사항
- 2004. 1. 1. 시행 제8차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04. 4. 12. 시행 제9차 속초항 도선료 신설 신고사항
- 2004. 6. 1. 시행 제10차 포항항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05. 7. 1. 시행 제11차 속초항 도선료 변경 및 인천항 영흥화력발전소 항만시설 도선료 신설 신고사항
- 2005. 10. 1. 시행 제12차 여수항(울촌항 및 태인도 부두) 도선료 신설 신고사항
- 2006. 2. 1. 시행 제13차 도선료 신설 및 변경 신고사항
- 2006. 10. 1. 시행 제14차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06. 12. 1. 시행 제15차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08. 1. 1. 시행 제16차 인천항, 울산항, 대산항 도선료 신설 및 변경 신고사항
- 2008. 1. 1. 시행 제17차 인천항, 대산항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08. 7. 1. 시행 제18차 야간도선 적용시간 변경 신고사항
- 2008. 7. 1. 시행 제19차 목포항 도선초과료 및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09. 1. 1. 시행 제20차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09. 8. 10. 시행 제21차 포항 영일만항 신설 도선료 신고사항
- 2009. 9. 11. 시행 제22차 평택·당진항 내항 동서부두 신설 도선료 신고사항
- 2010. 1. 1. 시행 제23차 인천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포항항 도선료 신설 및 변경 신고사항
- 2010. 9. 1. 시행 제24차 동해항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10. 12. 1. 시행 제25차 울산항 및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료 신설 신고사항
- 2011. 3. 1. 시행 제26차 인천항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11. 9. 1. 시행 제27차 최저도선료의 신설 신고사항
- 2011. 12. 1. 시행 제28차 여수항 도선료 변경 및 인천항 도선구 경인항 도선료 신설 신고사항
- 2012. 8. 1. 시행 제29차 마산항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13. 2. 1. 시행 제30차 동해항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13. 4. 1. 시행 제31차 인천항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13. 12. 1. 시행 제32차 여수항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14. 1. 15. 시행 제33차 목포항 도선구간과 도선료 변경 및 여수항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14. 7. 1. 시행 제34차 동해 호산항 신설 도선료 및 동해항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14. 11. 1. 시행 제35차 여수항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15. 2. 1. 시행 제36차 대산항, 인천항, 마산항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도선대기료의 변경 신고사항
- 2015. 5. 1. 시행 제37차 부산항, 군산항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15. 8. 18. 시행 제38차 울산항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15. 12. 1. 시행 제39차 마산항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16. 1. 11. 시행 제40차 평택항, 동해항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16. 7. 1. 시행 제41차 제주항, 동해항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16. 10. 1. 시행 제42차 부산항, 마산항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17. 8. 1. 시행 제43차 여수항, 동해항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18. 1. 1. 시행 제44차 부산항, 인천항, 동해항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18. 8. 9. 시행 제45차 여수항, 울산항, 포항항, 목포항, 동해항, 제주항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18. 11. 1. 시행 제46차 마산항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19. 1. 1. 시행 제47차 부산항, 평택항, 동해항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19. 3. 22. 시행 제48차 마산항, 대산항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19. 8. 1. 시행 제49차 포항항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20. 1. 1. 시행 제50차 부산항, 대산항, 동해항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22. 2. 1. 시행 제51차 전체 도선구 도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22. 8. 30. 시행 제52차 동해항 도선구 안인항 도선료 신설 신고사항

[별표 1]

도선료(도선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도선구의 명칭	도 선 구 간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		범선 또는 예항되는 선박
		기 본 료 (총톤수가 1천톤 이하이 고 흘수가 3미터 이하인 선박)	초 과 료 (총톤수가 1천톤을 초과 하는 선박 또는 흘수가 3미터를 초과하는 선박)	
군산항	1. 제1도선점(북위 35도57분30초, 동경 126도23분20초)과 군산내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139,770원	○ 총톤수 1천톤을 초과 하는 매 1천톤(1천톤 미만은 1천톤으로 계 산한다)마다 기본요금 의 1할을 가산한 금액. 다만, 군산항 도선구 및 동해항 도선구의 경우는 매 500톤(500 톤 미만은 500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 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 흘수 3미터를 초과하는 매 30센티미터(30센 티미터 미만은 30센티 미터로 계산한다)마다 기 본요금의 1할을 가산 한 금액	기관을 사용하 는 선박의 도 선료에 8할을 가산한 금액
	2. 제1도선점과 군산외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117,030원		
	3. 군산항내에서의 이동	68,900원		
대산항	1. 보령도선점(북위 36도11분18초 동경 126도18분27초)과 보령항간 의 입항 또는 출항	161,310원		
	2. 신도도선점(북위 36도51분47초 동경 126도07분03초)과 대산항간 의 입항 또는 출항	175,540원		
	3. 신도도선점과 태안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122,400원		
	4. 장안대산도선점(북위 37도02분00초 동경 126도16분30초)과 대산 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120,660원		
	5. 신도도선점과 장안대산도선점간의 이동	144,750원		
	6. 장안대산도선점과 말륙도선점(북위 37도07분39초 동경 126도26분 41초)간의 입항 또는 출항	126,350원		
	7. 말륙도선점과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간의 입항 또는 출항	128,350원		
	8. 보령항내에서의 이동	76,440원		
	9. 대산항내에서의 이동	76,440원		
	10. 태안항내에서의 이동	76,440원		
	11.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내에서의 이동	92,430원		

[별표 1]

도선료(도선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도선구의 명칭	도 선 구 간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		범선 또는 예항되는 선박
		기 본 료 (총톤수가 1천톤 이하이 고 흘수가 3미터 이하인 선박)	초 과 료 (총톤수가 1천톤을 초과 하는 선박 또는 흘수가 3미터를 초과하는 선박)	
동해항	1. 제1도선점(북위 37도32분40초 동경 129도09분02초)과 묵호항간 입항 또는 출항	85,420원	○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때 1천톤(1천톤 미만은 1천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다만, 군산항 도선구 및 동해항 도선구의 경우는 매 500톤(500톤 미만은 500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 흘수 3미터를 초과하는 때 30센티미터(30센티미터 미만은 30센티미터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의 도선료에 8할을 가산한 금액
	2. 제2도선점(북위 37도31분04초, 동경 129도13분04초)과 동해항간 입항 또는 출항	122,560원		
	3. 제2도선점과 묵호항간 입항 또는 출항	88,750원		
	4. 제2도선점과 옥계항간 입항 또는 출항	181,910원		
	5. 제2도선점과 삼척항간 입항 또는 출항	85,420원		
	6. 제3도선점(북위 37도25분40초 동경 129도12분52초)과 삼척항간 입항 또는 출항	85,420원		
	7. 제4도선점(북위 37도37분22초 동경 129도06분22초)과 옥계항간 입항 또는 출항	132,020원		
	8. 제2도선점과 속초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229,200원		
	9. 제5도선점(북위 38도11분25초 동경 128도37분22초)과 속초항간 입항 또는 출항	151,840원		
	10. 호산항도선점(북위 37도11분40초 동경 129도24분30초)과 호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153,880원		
	11. 제6도선점(북위 37도44분12초 동경 129도02분08초)과 강릉안인항 화력발전소 항만시설간 입항 또는 강릉안인화력발전소 항만시설과 제7도선점(북위 37도46분00초 동경 129도 00분 32초)간 출항	153,880원		
	12. 묵호항내에서의 이동	85,420원		
	13. 동해항내에서의 이동	85,420원		
	14. 삼척항내에서의 이동	85,420원		
	15. 옥계항내에서의 이동	132,020원		
	16. 속초항내에서의 이동	151,840원		
	17. 호산항내에서의 이동	132,020원		
	18. 강릉안인화력발전소 항만시설내에서의 이동	132,020원		

[별표 1]

도선료(도선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도선구의 명칭	도 선 구 간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		범선 또는 예항되는 선박
		기본료 (총톤수가 1천톤 이하이 고 흘수가 3미터 이하인 선박)	초과료 (총톤수가 1천톤을 초과 하는 선박 또는 흘수가 3미터를 초과하는 선박)	
마산항	1. 마산도선점(북위 34도58분00초 동경 128도49분12초)과 마산항 간 입항 또는 출항(총톤수 5천톤 이상)	265,870원	○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매 1천톤(1천톤 미만은 1천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다만, 군산항 도선구 및 동해항 도선구의 경우는 매 500톤(500톤 미만은 500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 흘수 3미터를 초과하는 매 30센티미터(30센티미터 미만은 30센티미터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의 도선료에 8할을 가산한 금액
	2. 마산도선점과 진해항 간 입항 또는 출항(총톤수 5천톤 이상)	263,230원		
	3. 마산도선점과 고현항 간 입항 또는 출항(총톤수 5천톤 이상)	270,750원		
	4. 제1도선점(북위 35도02분45초 동경 128도44분34초)과 마산항 간 입항 또는 출항(총톤수 5천톤 미만)	158,050원		
	5. 제1도선점과 진해항간 입항 또는 출항(총톤수 5천톤 미만)	155,400원		
	6. 제1도선점과 고현항간 입항 또는 출항(총톤수 5천톤 미만)	162,930원		
	7. 제2도선점(북위 35도08분42초 동경 128도36분18초)과 마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64,890원		
	8. 제3도선점(북위 35도04분11초 동경 128도42분07초)과 진해항간 입항 또는 출항	90,400원		
	9. 제4도선점(북위 34도55분26초 동경 128도33분52초)과 고현항간 입항 또는 출항	156,930원		
	10. 제5도선점(북위 34도56분16초 동경 128도45분46초)과 옥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152,940원		
	11. 제6도선점(북위 34도54분31초 동경 128도43분20초)과 옥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140,640원		
	12. 제7도선점(북위 34도52분07초 동경 128도05분15초)과 삼천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189,340원		
	13. 제8도선점(북위 34도49분11초 동경 128도48분52초)과 지세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272,590원		
	14. 제9도선점(북위 34도56분11초 동경 128도50분12초)과 통영LNG 생산기시간 입항 또는 출항	355,620원		
	15. 마산항내에서의 이동	61,800원		
	16. 진해항내에서의 이동	90,400원		
	17. 고현항내에서의 이동	156,930원		
	18. 옥포항내에서의 이동	140,640원		
	19. 삼천포항내에서의 이동	189,340원		
	20. 지세포항내에서의 이동	163,230원		
	21. 통영 LNG 생산기지내에서의 이동	163,130원		
	22. 제1도선점과 통영 LNG 생산기시간 입항 또는 출항(총톤수 5천톤 미만 선박)	215,270원		
	23. 마산도선점과 통영 LNG 생산기시간 입항 또는 출항(총톤수 5천톤 이상 선박)	323,090원		

[별표 1]

도선료(도선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도선구의 명칭	도 선 구 간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		범선 또는 예항되는 선박
		기 본 료 (총톤수가 1천톤 이하이 고 흘수가 3미터 이하인 선박)	초 과 료 (총톤수가 1천톤을 초과 하는 선박 또는 흘수가 3미터를 초과하는 선박)	
목포항	1. 제1도선점(북위 34도27분42초 동경 126도03분45초)과 제2도선점 (북위 34도46분00초 동경 126도15분00초)간의 입항 또는 출항	166,140원	○ 총톤수 1천톤을 초 과하는 매 1천톤(1천 톤 미만은 1천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 금의 1할을 가산한 금 액. 다만, 군산항 도 선구 및 동해항 도 선구의 경우는 매 500톤(500톤 미만은 500톤으로 계산한다.) 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 흘수 3미터를 초과하는 매 30센티미터(30센 티미터 미만은 30센티 미터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 산한 금액	기관을 사용하 는 선박의 도 선료에 8할을 가산한 금액
	2. 제2도선점과 목포신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162,890원		
	3. 제2도선점과 목포내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204,210원		
	4. 목포신항과 목포내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178,050원		
	5. 목포신항내에서의 이동	134,890원		
	6. 완도항 도선점(북위 34도17분30초 동경 126도48분30초)과 완도항 간의 입항 또는 출항	249,040원		
	7. 목포내항내에서의 이동	96,850원		
	8. 완도항내에서의 이동	249,040원		
부산항	1. 제1도선점(북위 35도04분11초 동경 129도08분47초)과 북내항간 입항 또는 출항	69,890원		
	2. 제1도선점과 북외항간 입항 또는 출항	64,890원		
	3. 북내항과 북외항간 입항 또는 출항	64,890원		
	4. 제2도선점(북위 35도01분41초 동경 129도02분22초)과 감천항간 입항 또는 출항	87,750원		
	5. 부산신항도선점(북위 34도58분00초 동경 128도49분15초)과 부산 신항만간의 입항 또는 출항	156,410원		
	6. 부산항 및 감천항내 이동	61,800원		
	7. 부산신항만내에서의 이동	61,800원		
	8. 용호부두내에서의 이동	61,800원		
	9. 제1도선점과 용호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39,790원		
	10. 다대포항내에서의 이동	61,800원		
	11. 제2도선점과 다대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175,490원		

[별표 1]

도선료(도선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도선구의 명칭	도 선 구 간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		범선 또는 예항되는 선박
		기 본 료 (총톤수가 1천톤 이하이 고 흘수가 3미터 이하인 선박)	초 과 료 (총톤수가 1천톤을 초과 하는 선박 또는 흘수가 3미터를 초과하는 선박)	
여수항	1. 제1도선점(북위 34도41분00초, 동경 127도56분00초)과 여수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104,930원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의 도선료에 8할을 가산한 금액 ○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매 1천톤(1천톤 미만은 1천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다만, 군산항 도선구 및 동해항 도선구의 경우는 매 500톤(500톤 미만은 500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 흘수 3미터를 초과하는 매 30센티미터(30센티미터 미만은 30센티미터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2. 제1도선점과 광양항간(백도-삼남부두구역)간 입항 또는 출항	139,450원		
	3. 제1도선점과 광양제철소 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42,740원		
	4. 제1도선점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62,530원		
	5. 제1도선점과 울촌 사업단지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219,820원		
	6. 제1도선점과 하동항간 입항 또는 출항	163,620원		
	7. 제1도선점과 광양항 LNG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259,750원		
	8. 제2도선점(북위 34도44분05초, 동경 127도49분05초)과 여수항간 입항 또는 출항	64,890원		
	9. 제2도선점과 광양항(백도-삼남부두구역)간 입항 또는 출항	98,250원		
	10. 제2도선점과 광양제철소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01,430원		
	11. 제2도선점과 광양항(GS제2제품부두-송도구역)간 입항 또는 출항	118,950원		
	12. 제2도선점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20,540원		
	13. 제2도선점과 하동항간 입항 또는 출항	121,590원		
	14. 제2도선점과 울촌 산업단지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75,890원		
	15. 광양항내와 울촌 산업단지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22,700원		
	16. 제2도선점과 태인도 시멘트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21,590원		
	17. 광양항내와 태인도 시멘트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81,040원		
	18. 제2도선점과 광양항 LNG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214,470원		
	19. 광양항내에서의 이동 (울촌산업단지부두와 태인도시멘트부두 제외)	66,550원		
	20. 여수항내에서의 이동	61,800원		
	21. 하동항내에서의 이동	66,550원		
	22. 제1도선점과 W외측구역간 해상유류이송 작업을 위한 입항 또는 출항	305,980원		
	23. 제2도선점과 W외측구역간 해상유류이송 작업을 위한 입항 또는 출항	180,580원		

[별표 1]

도선료(도선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도선구의 명칭	도 선 구 간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		범선 또는 예항되는 선박
		기 본 료 (총톤수가 1천톤 이하이 고 흘수가 3미터 이하인 선박)	초 과 료 (총톤수가 1천톤을 초과 하는 선박 또는 흘수가 3미터를 초과하는 선박)	
울산항	1. 제1도선점(북위 35도22분36초 동경 129도26분00초)과 울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96,220원	○ 총톤수 1천톤을 초 과하는 매 1천톤(1천 톤 미만은 1천톤으 로 계산한다)마다 기 본요금의 1할을 가산 한 금액. 다만, 군산 항 도선구 및 동해 항 도선구의 경우는 매 500톤(500톤 미만 은 500톤으로 계산 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 흘수 3미터를 초과하 는 매 30센티미터(30 센티미터 미만은 30센 티미터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 산한 금액	기관을 사용하 는 선박의 도선 료에 8할을 가 산한 금액
	2. 제1도선점과 미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123,870원		
	3. 제1도선점과 온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82,000원		
	4. 제1도선점과 울산남신항간 입항 또는 출항	156,590원		
	5. 제1도선점과 울산북신항간 입항 또는 출항	219,820원		
	6. 제2도선점(북위35도22분00초 동경129도27분30초)과 울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147,040원		
	7. 제2도선점과 미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153,090원		
	8. 제2도선점과 온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132,340원		
	9. 제2도선점과 울산남신항간 입항 또는 출항	179,220원		
	10. 제2도선점과 울산북신항간 입항 또는 출항	251,600원		
	11. 울산항과 온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94,160원		
	12. 제3도선점(북위 35도20분55초 동경 129도28분50초)과 원유부이간 의 입항 또는 출항	169,710원		
	13. 울산항내에서의 이동	61,800원		
	14. 미포항내에서의 이동	62,780원		
	15. 온산항내에서의 이동	61,800원		
	16. 원유부이에서의 이동	133,380원		
	17. 울산남신항내에서의 이동	61,800원		
	18. 울산북신항내에서의 이동	61,800원		

[별표 1]

도선료(도선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도선구의 명칭	도 선 구 간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		범선 또는 예정되는 선박
		기 본 료 (총톤수가 1천톤 이하이 고 흘수가 3미터 이하인 선박)	초 과 료 (총톤수가 1천톤을 초과 하는 선박 또는 흘수가 3미터를 초과하는 선박)	
인천항	1. 팔미도선점(북위 37도20분22초 동경 126도28분18초, 다만, 폭풍주의보 발효시는 북위 37도22분40초 동경 126도32분24초)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한 정박지(이하 “정박지”라 한다)간의 입항 또는 출항	100,450원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의 도선료에 8할을 가산한 금액 ○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매 1천톤(1천톤 미만은 1천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다만, 군산항 도선구 및 동해항 도선구의 경우는 매 500톤(500톤 미만은 500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 흘수 3미터를 초과하는 매 30센티미터(30센티미터 미만은 30센티미터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2. 팔미도선점과 인천항 선거내간의 입항 또는 출항	172,570원		
	3. 팔미도선점과 인천 북항 또는 경인항도선점(북위 37도30분36초 동경 126도35분53초)간의 입항 또는 출항	163,940원		
	4. 팔미도선점과 신국제여객터미널간 입항 또는 출항	141,320원		
	5. 장안인천도선점(북위 37도04분40초 동경 126도16분05초, 다만 폭풍주의보 발효시 북위 37도06분41초 동경 126도19분06초)과 팔미도선점간의 입항 또는 출항 및 팔미도선점과 동백도선점(북위 37도13분50초 동경 126도13분05초)간의 입항 또는 출항	194,500원		
	6. 팔미도선점과 남항·연안부두간의 입항 또는 출항	137,670원		
	7. 장안인천도선점과 북장자서 묘지간의 입항 또는 출항	191,960원		
	8. 북장자서 묘지와 팔미도선점간의 입항 또는 출항	64,220원		
	9. 인천항 정박지와 인천항 선거내간의 입항 또는 출항	147,100원		
	10. LNG선의 장안인천도선점과 북장자서간의 입항 또는 출항 및 북장자서와 동백도선점간의 입항 또는 출항	283,330원		
	11. LNG선의 북장자서와 인천 LNG 터미널간의 입항 또는 출항	104,110원		
	12. 장안인천도선점과 영흥화력발전소 항만시설간의 입항 또는 출항 또는 및 영흥화력발전소 항만시설과 동백도선점간의 입항 또는 출항	316,340원		
	13. 장안인천도선점과 인천신항도선점(북위 37도 19분 10초, 동경 126도 27분 35초) 간의 입항 또는 출항	233,800원		
	14. 인천신항도선점과 인천신항 간의 입항 또는 출항	178,970원		
	15. 인천항내에서의 이동(선거외)	97,800원		
	16. 인천항내에서의 이동(선거내만)	63,370원		
	17. 경인항도선점과 인천터미널(선거외)간의 입항 또는 출항	253,490원		
	18. 경인항갑문통항구간	253,490원		
	19.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간의 이동	350,980원		
	20. 경인항내에서의 이동	253,490원		

[별표 1]

도선료(도선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도선구의 명칭	도 선 구 간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		범선 또는 예항되는 선박
		기 본 료 (총톤수가 1천톤 이하이 고 흘수가 3미터 이하인 선박)	초 과 료 (총톤수가 1천톤을 초과 하는 선박 또는 흘수가 3미터를 초과하는 선박)	
제주항	1. 제1도선점(북위 33도34분00초 동경 126도33분00초)과 제주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102,030원		기관을 사용하 는 선박의 도선 료에 8할을 가 산한 금액
	2. 제주항내에서의 이동	102,030원		
	3. 강정항 도선점(북위 33도12분00초 동경 126도31분24초)과 강정항 간의 입항 또는 출항	102,030원		
	4. 강정항내에서의 이동	102,030원		
	5. 애월항도선점(북위 33도31분00초 동경 126도21분18초)과 애월항간 의 입항 또는 출항	377,830원		
	6. 애월항내에서의 이동	377,830원		
통영항	1. 제1도선점(북위 34도45분11초 동경 128도26분52초)과 통영항간 입항 또는 출항	69,700원		기관을 사용하 는 선박의 도선 료에 8할을 가 산한 금액
	2. 통영항 내에서의 이동	61,800원		
평택·당진항	1. 장안평택·당진도선점(북위 37도03분22초 동경 126도17분17초, 다만 「기상업무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폭풍주의보 가 발 효된 때에는 북위 37도05분58초 동경 126도20분11초)과 입파도선 점(북위 37도08분10초, 동경 126도29분53초)간의 입항 또는 출항	99,820원		기관을 사용하 는 선박의 도선 료에 8할을 가 산한 금액
	2. 대형 광탄선의 장안평택·당진도선점과 입파도선점간의 이동	163,230원		
	3. 대형 광탄선의 입파도선점과 현대제철부두간의 입항 또는 출항	363,690원		
	4. 입파도선점과 평택·당진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138,100원		
	5. 입파도선점과 평택·당진항 동·서부두간의 입항 또는 출항	162,530원		
	6. 입파도선점과 평택·당진항 내항 동·서부두간의 입항 또는 출항	211,890원		
	7. 장안평택·당진도선점과 평택·당진항 LNG 터미널 간의 입항 또는 출항	377,830원		
	8. 평택·당진항 내항 및 외항간의 이동	99,830원		
	9. 평택·당진항내에서의 이동	71,310원		

[별표 1]

도선료(도선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도선구의 명칭	도 선 구 간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		범선 또는 예항되는 선박
		기 본 료 (총톤수가 1천톤 이하이 고 흘수가 3미터 이하인 선박)	초 과 료 (총톤수가 1천톤을 초과 하는 선박 또는 흘수가 3미터를 초과하는 선박)	
포항항	1. 제1도선점(북위 36도06분11초 동경 129도29분52초)과 포항항간 입항 또는 출항 2. 제1도선점과 영일만항간 입항 또는 출항 3. 영일만항과 포항항간의 이동 4. 영일만항과 정박지간의 이동 5. 영일만항내에서의 이동 6. 포항항내에서의 이동	133,230원 102,720원 136,960원 97,150원 84,200원 118,120원	○ 총톤수 1천톤을 초 과하는 매 1천톤(1천 톤 미만은 1천톤으 로 계산한다)마다 기 본요금의 1할을 가산 한 금액. 다만, 군산 항 도선구 및 동해 항 도선구의 경우는 매 500톤(500톤 미만 은 500톤으로 계산 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 흘수 3미터를 초과하 는 매 30센티미터(30 센티미터 미만은 30센 티미터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 산한 금액	기관을 사용하 는 선박의 도선 료에 8할을 가 산한 금액

[비 고]

1. 위 표에서 흘수는 도선을 시작한 때로부터 도선이 끝날 때까지의 흘수 중 최대의 것으로 하고, 배수량으로 적량을 표시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그 배수톤수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톤수를 당해 선박의 총톤수로 본다.
2. 선박의 총톤수가 2중으로 표시되는 선박에 있어서는 그중 큰 톤수로서 계산한다.
3. 법 제2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의 승무를 면제받은 선박의 선장이 당해 선박의 도선을 요청할 때에는 도선료의 2.5할을 감액한다.
4. 평택·당진항 도선구내 대형 광탄선 도선구간의 운항여건을 감안하여 5만GRT이상 대형선박에 대해서는 도선료의 30% 「여건할증」을 적용하되,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5%의 여건할증을 적용한다. 단, 여건할증의 원인(수심, 항로폭, 양방향 통항)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여건할증은 폐지한다.
5. 여수항 도선구내 부두에 대해 부두여건, 흘수 항로폭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여건할증」을 적용한다. 단, 여건 개선 시 여건할증을 폐지하며, 일부만 개선된 경우 할증률을 재조정한다. (2018. 8. 9. 시행)

대 상	여건 할증요율	할증폐지요건
1. 제1도선점과 사포부두에 입·출항하는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위험물 운반선 (정박지 경유 포함)	40%	방충재 등 부두시설 보강
2. 제1도선점과 석유공사부두에 입·출항하는 위험물 운반선 (정박지 경유 포함)		
1) 총톤수 5만톤 이상 15만톤 미만의 선박	30%	방충재 등 부두시설 보강
2) 총톤수 15만톤 이상의 선박	33%	
3. 제1도선점과 GS원유부두에 입·출항하는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위험물 선박 (정박지 경유 포함)	30%	방충재 등 부두시설 보강
4. 제1도선점과 광양항 LNG 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정박지 경유 포함)	30%	대형선 입항로 개설
5. 제1도선점 또는 제2도선점과 하동항에 입·출항하는 선박 (정박지 경유 포함)		
1) 총톤수 8만톤 미만의 선박	85%	
2) 총톤수 8만톤 이상의 선박	85%, 톤당 40원 특별할증	항로폭 확장, 적정수심 확보
3) 야간에 입·출항하는 선박	톤당 40원 특별할증	

대 상	여건 할증요율	할증폐지요건
6. 제1도선점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간 입·출항하는 총톤수 13만톤 이상의 컨테이너선박	30%	적정수심 확보
7. 제1도선점 또는 제2도선점과 OKYC부두에 입·출항하는 위험물운반선		방충재 등 부두시설 보강
1) 총톤수 5만톤 미만의 선박	30%	
2) 총톤수 5만톤 이상 15만톤 미만의 선박	60%	
3) 총톤수 15만톤 이상의 선박	95%	
8. 제1도선점과 광양제철소 원료부두에 입·출항하는 총톤수 7만톤 또는 흘수 14m이상의 선박 (정박지 경유 포함)	60%	적정수심 확보, 부두시설 보강
9. 제2도선점과 GS제품부두에 입·출항하는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위험물운반선	5%	방충재 등 부두시설 보강
10. 제2도선점과 GS우순도부두에 입·출항하는 총톤수 6천톤 이상의 위험물운반선	7%	방충재 등 부두시설 보강
11. 제2도선점과 광양제철소 제품부두에 입·출항하는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	17%	방충재 등 부두시설 보강
12. 제1도선점 또는 제2도선점과 금호석탄부두에 입·출항하는 총톤수 4만톤 이상의 선박	50%	방충재 등 부두시설 보강
13. 제1도선점 또는 제2도선점과 울촌산단 오리엔트조선소에 입·출항하는 선박		항로폭 확장, 적정수심 확보
1) 총톤수 5천톤 이상 5만톤 미만의 선박	100%	
2)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 (보조도선사 승선)	150%	

6. 대산항도선구내 삼성토탈 신부두의 접근항로 저수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2개구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여건할증」을 적용한다. 단, 접근항로 수심 17미터 이상을 확보한 시점에서 여건할증을 폐지한다. (2015. 2. 1. 신설)

대 상	여건할증요율
1. 신도도선점~대산항간(삼성토탈 신부두구역) 입항 또는 출항	75%
2. 대산항내(정박지, 삼성토탈 31번석~삼성토탈 신부두구역)에서의 이동	130%
※ 단, 총톤수(GRT) 5만톤급 이상 선박에 한하여 적용한다.	

7. 마산항도선구내에 도선여건을 고려하여 옥포, 고현(성포 포함), 안정(고성 포함), 진해항에 입·출항하는 신조선 선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여건할증」을 적용한다. (2015. 2. 1. 신설)

대 상(톤수기준)	여건할증요율
1. GT 8만톤 이상 ~ 11만톤 미만	현행 도선료의 30% 할증
2. GT 11만톤 이상 ~ 14만톤 미만	현행 도선료의 50% 할증
3. GT 14만톤 이상 ~ 17만톤 미만	현행 도선료의 60% 할증
4. GT 17만톤 이상	현행 도선료의 90% 할증

8. 마산항도선구내에 삼천포항은 항로여건(수심, 항로 폭, 부두 설계용량 초과 선박) 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여건할증」을 적용한다. 단, 여건 개선 시 여건할증을 폐지한다. (2018. 11. 1. 변경)

대 상(톤수기준)	여건할증요율
제7도선점과 삼천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30%

9. 제주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운항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여건할증」을 적용한다. (2016. 7. 1. 신설)

대 상(톤수기준)	여건할증요율
1. GT 6만톤 이상 ~ 8만톤 미만	20% 할증
2. GT 8만톤 이상 ~ 10만톤 미만	40% 할증
3. GT 10만톤 이상	60% 할증

10. 부산항 북항(내·외항)에 입·출항하는 G/T 8만톤 이상 컨테이너선박과 크루즈선박 도선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여건할증」을 적용한다.

대 상(톤수기준)	여건할증요율
부산항 제1도선점과 북항 내·외항 입·출항간	40% 할증
※ 북항(내·외항)에 입·출항하는 GT 8만톤 이상 컨테이너선박 및 크루즈선박 대상	

11. 제주항도선구 강정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운항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여건할증」을 적용한다.(2022.02.01. 시행)

대 상(톤수기준)	여건할증요율
1. GT 6만톤 이상 ~ 8만톤 미만	20% 할증
2. GT 8만톤 이상 ~ 10만톤 미만	40% 할증
3. GT 10만톤 이상	60% 할증

12. 울산항도선구의 야간도선 확대 및 입·출항 선박 도선작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여건할증」을 적용한다. 단, 여건개선 시 여건할증을 폐지하며, 일부만 개선된 경우 할증률을 재조정한다. (2019. 1. 1. 시행)

대 상(톤수기준)	여건할증요율	할증폐지요건
1. 제1도선점과 울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하는 총톤수 1만톤 초과 선박	35% 할증	항로폭 확장 피항수역 개설 부두시설 보강
2. 제1도선점과 온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하는 총톤수 1만톤 초과 위험물운반선	50% 할증	선회수역 확충 부두시설 보강
3. 제2도선점과 울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하는 총톤수 5만톤 이상 또는 길이 200미터 이상의 선박	30% 할증	항로폭 확장 피항수역 개설 부두시설 보강
4. 제2도선점과 온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하는 총톤수 5만톤 이상 또는 길이 200미터 이상의 위험물 운반선	50% 할증	선회수역 확충 부두시설보강
5. 울산항과 온산항간 이동하는 총톤수 1만톤 초과 선박	50% 할증	항로폭 확장 피항수역 개설 부두시설 보강
6. 제1도선점과 온산 1/2/3/5 부두를 입항 또는 출항하는 총톤수 1만톤 초과 선박	40% 할증	선회수역 확충 부두시설 보강

13. 동해항도선구 호산항의 강한 너울성 파도로 인한 도선작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여건할증」을 적용한다. 단, 북방파제 완공 시 여건할증을 폐지한다. (2018. 8. 9. 시행)

대 상(도선구간)	여건할증요율
1. 호산항 남부발전부두 입항 또는 출항	18% 할증
2. 호산항 남부발전부두 북측항로 출항	18% 할증
3. 호산항 남부발전부두 야간 입항 또는 출항	20% 할증

14. 동해항도선구 안인항의 강한 너울성 파도로 인한 도선작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여건할증」을 적용한다. 단, 여건 개선 시 여건할증을 폐지한다. (2022. 8. 30. 시행)

대 상(도선구간)	여건할증요율
1.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입항 또는 출항	18% 할증
2.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야간 입항 또는 출항	20% 할증

15. 목포항도선구내 입·출항 신조선에 대해 선박의 규모 및 흘수, 항로폭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여건할증」을 적용한다. (2018. 9. 1. 시행)

대 상(도선구간)	여건할증요율	할증폐지요건
1. 제1도선점 또는 제2도선점과 현대삼호조선소 및 대한조선소에 입·출항하는 선박		항로폭 확장, 적정수심 확보
1) 총톤수 6만톤 이상 10만톤 미만의 선박	60% 할증	
2) 총톤수 10만톤 이상의 선박	90% 할증	
2. 제1도선점 또는 제2도선점과 북항 조선소에 입·출항하는 선박	30% 할증	

16. 대산항 도선구 보령항의 항로여건(어망, 항로폭, 암반 2개소, 저수심) 등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도선구간 신설」 및 「여건할증」을 적용한다. 단, 항로여건이 개선될 시 여건할증요율을 조정 또는 폐지한다.(2022.02.01. 시행)

도선구의 명칭	도 선 구 간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		범선 또는 예정되는 선박
		기 본 료 (총톤수가 1천톤 이하이고 흘수가 3미터 이하인 선박)	초 과 료 (총톤수가 1천톤을 초과 하는 선박 또는 흘수가 3미터를 초과하는 선박)	
대산항	1. 보령도선점과 보령LNG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2. 보령도선점과 중부발전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3. 보령항내에서의 이동(LNG부두, 중부발전부두)	342,000원 290,360원 99,570원	○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매 1천톤(1천톤 미만은 1천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다만, 군산항 도선구 및 동해항 도선구의 경우는 매 500톤(500톤 미만은 500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의 도선료에 8할을 가산한 금액

대 상(도선구간)	여건할증요율
1. 보령도선점과 보령LNG부두 간 입항 또는 출항	92%
2. 보령도선점과 중부발전부두 간 입항 또는 출항	73%

17. 대산항 도선구 KNOC 부두의 수심(조석 차에 의한 강조류) 등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여건할증」을 적용한다. 단, 여건 개선 시 여건할증을 폐지한다.

대 상(도선구간)	여건할증요율
1. 신도도선점과 대산항 KNOC 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45%
※ 단, 총톤수(GRT) 14만톤급 이상 선박에 한하여 적용한다.	

18. 울산 북신항의 항만 여건을 고려하여 제2도선점에서 울산 북신항에 입·출항 하는 200미터 이상 선박에 대하여 여건할증 100%를 적용한다.
(2022.02.01. 신설)

19. 평택·당진항 도선구내 부두에 대해 저수심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여건할증을 적용한다. 단, 여건 개선 시 여건할증을 폐지하며, 일부만 개선된 경우 할증률을 재조정한다.(2022.02.01. 신설)

대 상(도선구간)	여건할증요율	할증폐지요건
입파도선점과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2번, 4번, 5번 부두 우현 및 14번 부두에 좌현 입항하는 선박	30%	적정 수심 및 선회장 확보
※ 총톤수 25,000톤 (SDWT 50,000) 이상 선박에 한하여 적용한다.		

20. 제주항 도선구 애월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운항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여건할증을 적용한다.(2022.02.01. 신설)

대 상(도선구간)	여건할증요율
애월항 도선점과 애월항 LNG 터미널간	145%
※ 단, 총톤수(GRT) 1만톤 미만 LNG 선박에 한하여 적용한다.	

21. 마산항 도선구 통영 LNG 생산기지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운항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여건할증을 적용한다.(2022.02.01. 신설)

대 상(도선구간)	여건할증요율
제9도선점과 통영 LNG 생산기지 간	300%
※ 단, 총톤수(GRT) 1만톤 미만 LNG 선박에 한하여 적용한다.	

도 선 선 료

- 도선선료
- 도선선료의 할증
- 1998. 7. 1. 시행 제1차 도선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04. 1. 1. 시행 제2차 도선선료(평택항) 신설 신고사항
- 2004. 10. 1. 시행 제3차 도선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06. 1. 1. 시행 제4차 도선선료(신항) 신설 신고사항
- 2006. 10. 8. 시행 제5차 도선선료(군산항) 변경 신고사항
- 2008. 1. 1. 시행 제6차 도선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10. 9. 1. 시행 제7차 도선선료(대산항, 목포항) 변경 신고사항
- 2011. 9. 1. 시행 제8차 도선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11. 12. 1. 시행 제9차 도선선료(인천항) 신설 신고사항
- 2012. 9. 1. 시행 제10차 도선선료(인천항, 마산항) 변경 신고사항
- 2014. 7. 1. 시행 제11차 도선선료(동해항) 변경 신고사항
- 2015. 2. 1. 시행 제12차 도선선료 변경 신고사항
- 2015. 5. 1. 시행 제13차 도선선료(군산항) 변경 신고사항
- 2016. 7. 1. 시행 제14차 도선선료(제주항) 변경 신고사항
- 2017. 8. 1. 시행 제15차 도선선료(동해항) 변경 신고사항
- 2018. 1. 1. 시행 제16차 도선선료(목포항) 변경 신고사항

- 2018. 8. 9. 시행 제17차 도선선료(동해항, 제주항) 변경 신고사항
- 2020. 1. 1. 시행 제18차 도선선료(부산항) 변경 신고사항
- 2022. 2. 1. 시행 제19차 도선선료(평택·당진항, 제주항) 변경 신고사항
- 2022. 8. 30. 시행 제20차 도선선료(동해항) 신설 신고사항
- 2023. 9. 1. 시행 제21차 도선선료 변경 신고사항

[별표 2]

도선선료(도선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변경시행: 2023. 09. 01.)		
도선선운항거리	도 선 선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해리이하 ○ 3해리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만1천580원 ○ 3해리를 초과한 때 1해리(1해리 미만은 1해리로 계산한다)마다 7천80원(단, 마산, 대산항 도선구는 9천80원으로, 인천·여수·평택·목포 도선구는 8천310원으로 한다) 	
비 고		
<p>1. 상시 운항구간은 위 금액의 범위내에서 해당 지방도선운영협의회의 산정과 중앙도선운영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98. 6. 26 개정)</p> <p>2. 도선사가 도선을 위하여 또는 도선을 종료한 후 육상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실비의 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p> <p>3. 도선선사용료를 3개월이상 체불한 선사 및 대리점에 대하여는 당해 도선구에서 도선선 운항을 중지할 수 있다.(’98. 6. 26 신설)</p>		
1) 대산항(보령)		
도 선 구 간	도선선료	비 고
○ 보령어항 ~ 보령도선점(검역묘지)	67만2천30원	
○ 보령어항 ~ A1, A2, A3묘지	29만250원	
○ 보령어항 ~ A4묘지	34만8천300원	
○ 보령어항 ~ A5묘지	40만6천340원	
○ 대산항 ~ 보령항간 육상이동	8만7천520원(실비)	
2) 부산항 도선구		
도 선 구 간	도선선료	비 고
○ 가덕도선점 ~ 신항만	52만8천990원	
○ 제1도선점 ~ 용호부두	25만6천410원	
○ 제2도선점 ~ 다대포항	33만330원	
3) 군산항 도선구		
도 선 구 간	도선선료	비 고
○ 제1도선점 ~ 군산외항	32만7천930원	
4) 인천항 도선구		
도 선 구 간	도선선료	
○ 도선선정계지 ~ 경인항도선점	71,580원+D(도선선 운항거리)	
○ 도선선정계지 ~ 경인항 인천터미널	x 8.6 ltr/mile x P(분기별 평균 경유가격, 연동제)	
○ 육상이동 여비	16만4천100원(실비)	
5) 동해항 도선구		
도 선 구 간	도선선료	비 고
○ 도선선정계지 ~ 동해항	17만7천130원	
○ 도선선정계지 ~ 삼척항	23만570원	
○ 도선선정계지 ~ 옥계항	29만1천650원	
○ 도선선정계지 ~ 묵호항	11만5천380원	
○ 도선선정계지 ~ 호산항	94만6천950원	
○ 도선선정계지 ~ 속초항	89만4천110원	
○ 도선선정계지 ~ 안인항	94만6천950원	
○ 육상이동 여비(호산항, 안인항)	23만6천원(실비)	

6) 제주항 도선구			9) 포항항 도선구		
도 선 구 간	도선선료	비 고	도 선 구 간	도선선료	비 고
○ 제1도선점 ~ 제주항	47만5천650원		○ 제1도선점 ~ 포항항	16만1천190원	
○ 강정항도선점 ~ 강정항	47만5천650원		○ 제1도선점 ~ 영일만항	22만2천260원	
○ 애월항도선점 ~ 애월항	159만7천240원		○ 영일만항 ~ 포항항	17만6천460원	
7) 목포항 도선구			○ 영일만항 ~ 정계지	17만6천460원	
도 선 구 간	도선선료	비 고	○ 영일만항내에서의 이동	17만6천460원	
○ 제1도선점 ~ 정계지	75만5천350원		○ 포항항내에서의 이동	7만7천210원	
○ 제2도선점 ~ 정계지	32만1천300원				
○ 목포신항 ~ 목포내항	15만7천920원				
○ 목포신항내에서의 이동	15만7천920원				
○ 목포내항내에서의 이동	9만5천140원				
8)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 선 구 간	도선선료	비 고			
○ 평택·당진항내에서의 이동	12만9천780원				
○ 장안·평택·당진도선점 ~ 정계지(궁평항)	49만2천300원				
○ 입파도선점 ~ 정계지(궁평항)	27만3천500원				
※ 단, 도선 정계지까지 이동하는 육상이동에 대하여 육상이동료 21만8천800원을 청구한다.					